

청주지방법원 2022. 4. 21 선고 2021가단677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2. 3. 24.

판 결 선 고 2022. 4. 21.

주 문

1. 가. 피고 B와 소외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2018. 3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B는 위 D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8. 3. 22. 접수 제311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가. 피고 C와 위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8. 3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나. 피고 C는 위 D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8. 3. 22. 접수 제31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(소장의 청구취지를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맞게 일부 선행하였다)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07년경 배우자인 소외 D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고, 2009. 8. 11.

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“D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8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,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.

나.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E이 소유하고 있었는데, 2017. 11. 13. E이 사망함에 따라 자녀인 D 외 2인이 각 1/3 지분씩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.

다. D은 2018. 3. 19.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지분을,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증여하였고, 2018. 3. 22. 각 증여에 따른 지분 내지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.

라. D은 위 재판상 이혼 청구 소송이 계속될 당시에는 충북 보은군 F 답 2,476㎡ 등의 토지들(당시 가액 합계 229,988,100원)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. 그런데 토지들의 경우 그 후 강제경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,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다.

[인정근거] 피고 B: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: 자백간주

2.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D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를 발생 내지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D과 피고들 사이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,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D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

있다.

피고 B는 '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D의 원래 상속지분은 1/5인데, 상속인들 중 2인이 상속을 받지 않아 D에게 1/3 지분이 상속된 것이므로, 원상회복은 1/5 지분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.'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런데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D이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1/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은 명백하다. 피고 B가 밝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토지의 1/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D의 소유가 아니라거나 D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.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권노을